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 알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16. 12. 2.(금)자로 불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으며, 개정내용은 '16. 12. 2.(금)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귀하, 대한한약사협회장 귀하,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화장품협회장 귀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귀하,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장 귀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귀하,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귀하,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귀하, 한국제약협회장 귀하, 한국한약산업협회장 귀하, 한국한약유통협회장 귀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귀하, 한국회귀의약품센터장 귀하

주무관 이동원 약무사무관 정현철 의약품정책과 전결 2016. 12. 6.
장 김상봉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10061 (2016. 12. 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21 팩스번호 043-719-2606 / ldw0925@korea.kr / 대국민 공개